GGWF REPORT

2020-09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연구

연구책임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홍서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감수위원**

김종수 사단법인 이음 사무국장
송영현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재용 경기대학교 외래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 ·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3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현실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이후 장애수당의 확대 및 인상, 장애인일자리의 확대 등과 같이 소득 및 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

- 특히 직접적인 소득지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정책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한 저소득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임
-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도 낮은 것이 현실임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소득지원 정책의 보완책으로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소극적 복지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이러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빈곤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추진을 검토
- 또한, 근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자산형성 관련 역량 증진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 연구의 주요 내용

○ 현행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점차적인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 마련되어 있는 수준

-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소득 중 지출의 비중도가 높아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안정적인 생활유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개념 정립 대안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활용

-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기존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 정책을 활용 가능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은 시민권 관점에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보편적 공공부조 등과 연계 강화

- 장애인의 기본적 특성인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 소득 역진적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보완적 성격의 자산형성 방식으로 설계
- 장애인의 지속적 근로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과 경기도의 역할, 유관 기관의 지원 등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

○ (사업목적)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가칭)의 사업목적은 장애로 인한 미래 비용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빈곤층의 전락을 예방하는데 있음

- 저소득층 근로 장애인에게 적금형 저축방식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취업,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
-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대상) 경기도 장애인자산형성사업의 대상은 경기도 거주 근로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대상을 점증적으로 확대

- 경기도 내 근로 장애인 가구는 211,291가구로 추정되며, 이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약 16.6만 가구로 추정

○ (지원내용) 경기도 내 근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은 개인의 부담금을 고려하여 매칭하고, 자산형성지원 외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역량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등을 병행 지원

- 개인 기여(저축)분은 5만원 ~ 15만원 범위로 설정하고,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최초 저축금액을 설정한 후 가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개인 기여(저축) 금액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 장애인이 경제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강화와 재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적립주체) 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의 주체는 사업 참여 당사자이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까지 인정

- 장애인의 가족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직계 존비속의 범위에 한정하며, 등본상 동거인의 경우에는 제외함

○ (적립기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적립기간은 최소 3년으로 설정하여 운영

- 자산형성 사업은 자산축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최소 기간이 필요하며,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최소 3년의 기간으로 설정

○ (운영체계) 장애인 자산형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립, 집행, 관리, 구체적인 운영 대상자 관리 등 사업 과정에 대한 각각의 주체를 설정하여 운영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 체계(안)〉

구분	주요 역할
경기도	• 사업총괄, 사업기획 수립·추진·관리, 예산 지원
시·군	• 시군별도 모집된 대상자의 심사, 최종 선정 대상자의 120%에 대한 명단 및 서류 제출
경기복지재단	• 참가자 최종 선정 및 통지, 참가자 매칭적립 지원, 참가자 저축관리, 참가자 금융 등 서비스 지원
협력기관	•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무컨설팅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접수 및 서류 심사, 사업홍보 등
협력 은행	• 매월 저축액 확인 및 통보, 계좌별 매칭 지원금 입금 등

○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②경기도형 장애인 소득보장지원 체계 구축이 선결

-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조례」 이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정립
-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조례」 제3장에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
  - "제24조(장애인 자산형성)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산형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의 신설
- 경기도는 기존 소득보장체계에서 배제되었거나, 장애인 자산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도형 장애인 기본소득(가칭) 제도를 신설 및 운영
- 이를 통해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편입하는 구조 구축

〈경기도형 장애인 소득보장지원 모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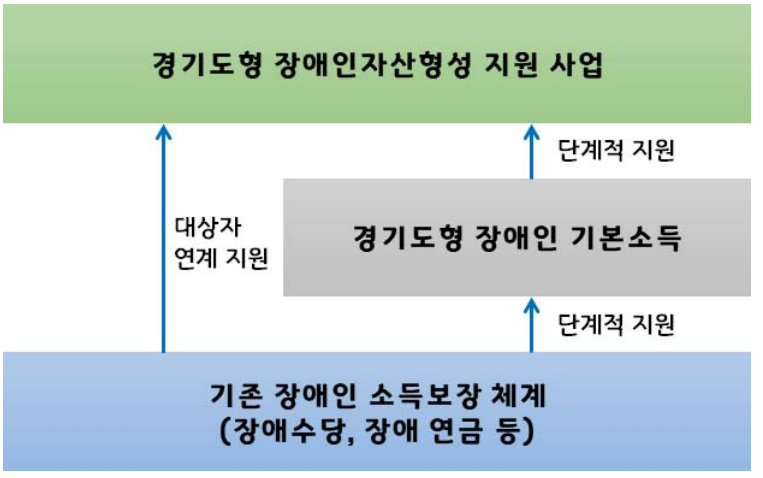

목차

Ⅰ |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Ⅱ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필요성과 실태 / 5**

1.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정책의 필요성 ····· 5
2. 장애인 근로 및 생활 실태 ····· 9

Ⅲ | **장애인 자산형성 사례 분석 / 17**

1. 국내 사례 ····· 17
2. 해외 사례 ····· 23
3. 시사점 ····· 29

Ⅳ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방안 / 33**

1.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기본 방향 ····· 33
2.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사업설계(안) ····· 36
3.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 45

참고문헌 / 49

표 차례

〈표 Ⅱ-1〉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 6
〈표 Ⅱ-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추정) ····· 9
〈표 Ⅱ-3〉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비교(추정) ····· 10
〈표 Ⅱ-4〉 연령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비교(추정) ····· 11
〈표 Ⅱ-5〉 경기도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 상태 ····· 12
〈표 Ⅱ-6〉 경기도 장애인의 평균 근로시간 ····· 13
〈표 Ⅱ-7〉 경기도 장애인의 근무지 유형 ····· 13
〈표 Ⅱ-8〉 경기도 근로 장애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 13
〈표 Ⅱ-9〉 경기도 근로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 14
〈표 Ⅱ-10〉 경기도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4
〈표 Ⅱ-11〉 경기도 장애인의 가구 및 개인 월 평균 수입 현황 ····· 15
〈표 Ⅲ-1〉 희망키움통장I 지원 내용 예시 ····· 19
〈표 Ⅲ-2〉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 20
〈표 Ⅲ-3〉 서울시 이룸통장 지원 내역(2019년 기준) ····· 21
〈표 Ⅲ-4〉 가구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 23
〈표 Ⅲ-5〉 가구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 24
〈표 Ⅲ-6〉 RDSP 계좌 요약 ····· 25
〈표 Ⅲ-7〉 TFDA의 지원내용 ····· 28
〈표 Ⅲ-8〉 TFDA 적립금액 가구 비중 변화 ····· 29
〈표 Ⅲ-9〉 국내·외 자산형성사업의 운영 내용 비교 ····· 30
〈표 Ⅳ-1〉 적립금 수준별 경기도 지원금 및 만기적립금 예상액 ····· 37
〈표 Ⅳ-2〉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 체계 ····· 39
〈표 Ⅳ-3〉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홍보 방안 ····· 41
〈표 Ⅳ-4〉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운영 절차 ····· 42
〈표 Ⅳ-5〉 개인별자산관리계획 수립 반영 주요 내용 ····· 43
〈표 Ⅳ-6〉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지원 대상 및 소요 예산 추정 ····· 44

그림 차례

〈그림 Ⅲ-1〉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추진체계 ····· 18
〈그림 Ⅲ-2〉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추진체계 ····· 19
〈그림 Ⅲ-3〉 서울시 '이룸통장' 가입자 선발 및 운영절차 ····· 22
〈그림 Ⅳ-1〉 경기도형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 방향 ····· 35
〈그림 Ⅳ-2〉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운영 절차(안) ····· 40
〈그림 Ⅳ-3〉 경기도형 장애인 소득보장지원 모델(안) ····· 47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장애인은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과 취약한 소득 수준으로 생활 여건 개선 정도가 미흡한 정도임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61.3%)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음(통계청, 2018)
  - · 장애인의 실업률은 5.1%로 2011년 장애인 실업률(6.2%)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업률 3.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1.2만원으로 2014년 223.5만원에 비해 8.3%p 증가하였으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61.7만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음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현실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이후 장애수당의 확대 및 인상, 장애인일자리의 확대 등과 같은 소득 및 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

- 특히 직접적인 소득지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정책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한 저소득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임
-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도 낮은 것이 현실임
- 또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대상자의 자립 및 안정적 사회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 등 정책동향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 모색 필요

○ 2000년 이후 국내에서도 소득지원의 보완책으로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소극적 복지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빈곤 예방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캐나다, 미국, 대만 등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사업을 운영 중임
  - 해외에서는 장애인의 단기적 소득보장을 통해 자산축적과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형성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Sherraden, 2005)
  - 자산형성사업은 단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으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이경란,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차원의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체계를 모색하는 것임

- 근로소득 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의 미래 위험성(실업, 빈곤층 전락 등)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자산형성사업을 도입하고자 함
- 근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자산형성과 관련한 역량을 증진시켜, 장애인 가구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장애인의 근로 활동 규모 및 실태 분석

- 통계청 및 경기도 행정자료 등을 통해 장애인 취업인구 및 취업률, 직종, 고용형태, 평균, 임금 등 장애인 근로 활동 현황을 분석
  - 장애유형, 연령, 성별, 학력 등 주요 변수별 고용 실태 파악

○ 근로 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욕구 파악

- 장애인실태조사(2017)의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 및 직업생활, 경제상황 등 장

애인 가구의 생활 실태 및 욕구 수준을 분석

○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 희망키움통장,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과 같은 국내 유사 제도와 캐나다의 RDSP, 영국의 Saving Gateway, 대만의 TFDA 등 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 마련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기본 방향 설정
  - · 근로 장애인의 근로유인기제 및 빈곤 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설계 및 운영 방향 설정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방안 제시
  - ·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정책효과성을 고려한 정책 대상 선정, 기존 제도와의 관계 설정
  - · 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전달체계 검토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장애인 자산형성 및 지원 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외 학술지 및 논문, 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 분석

○ 실태분석(2차 자료 분석)

-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경제활동 조사 등 주요 장애인 고용 및 생활 실태 관련 원자료(2차 자료,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조사) 분석

○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Ⅱ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필요성과 실태

1.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정책의 필요성

□ 장애인의 개념과 범위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2조)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은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분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경증과 중증에 대한 장애 유형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구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 장애인은 포괄적인 개념 범위를 적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함

- 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의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로 한정하여 개념을 정립하고자 함

□ 장애인 소득보장의 유형과 제약

○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제도가 운영됨

-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법」 을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공하는 급여로서,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을 근거로 운용되는 무기여식 공공부조제도이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로서 소득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됨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제50조를 근거로 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표 Ⅱ-1〉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table>
<tr><th>구분</th><th>제도</th><th>수급자격</th><th>수급내용</th></tr>
<tr><td rowspan="3">소득
보전
급여
제도</td><td>국민연금
장애연금</td><td>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 중
「국민연금법」 상 장애등급 1~4급인 자</td><td>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td></tr>
<tr><td rowspan="2">장애인연금
기초급여</td><td>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td><td><table><tr><th>구분</th><th>금액</th></tr><tr><td>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td><td>월300,000</td></tr><tr><td>차상위초과자 및 소득 하위 70%</td><td>월254,760</td></tr></table></td></tr>
<tr><td>※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지급</td><td>급여액 = 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급여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름</td></tr>
</table>

〈표 Ⅱ-1〉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계속)

<table>
<tr><th>구분</th><th>제도</th><th>수급자격</th><th>수급내용</th></tr>
<tr><td rowspan="3">추가 비용 급여 제도</td><td>장애수당</td><td>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td><td><table><tr><th>구분</th><th>금액</th></tr><tr><td>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td><td>월40,000</td></tr><tr><td>차상위초과자 및 소득 하위 70%</td><td>월20,000</td></tr></table></td></tr>
<tr><td>장애아동 수당</td><td>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td><td><table><tr><th>구분</th><th>1</th><th>2</th><th>3</th><th>4</th></tr><tr><td>중증 장애인</td><td>200,00</td><td>150,000</td><td>150,000</td><td>70,000</td></tr><tr><td>경증 장애인</td><td>100,000</td><td>100,000</td><td>100,000</td><td>20,000</td></tr></table>주) 1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 차상위계층
4 : 보장시설 수급자</td></tr>
<tr><td>장애인연금 부가급여</td><td>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td><td><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금액</th></tr><tr><td rowspan="2">기초생활 보장수급자</td><td>18세~64세</td><td>월80,000</td></tr><tr><td>65세 이상</td><td>월380,000</td></tr><tr><td rowspan="2">차상위계층 (주거, 교육)</td><td>18세~64세</td><td>월70,000</td></tr><tr><td>65세 이상</td><td>월70,000</td></tr><tr><td rowspan="2">차상위초과</td><td>18세~64세</td><td>월20,000</td></tr><tr><td>65세 이상</td><td>월40,000</td></tr></table>주) 1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 차상위계층
4 : 보장시설 수급자</td></tr>
</table>

주1)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급여는 제외함
주2) 장애연금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과는 다름
주3)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산정은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52조에서 각각 규정함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점차적인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 마련

-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소득 중 지출의 비중도가 높아 안정적인 생활유지 및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장애인 자산형성의 필요성

○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안정적인 생활유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개념 정립 대안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활용

-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기존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 정책을 활용 가능
- 해외에서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저축 유인 및 가치 상승을 촉진하여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 등이 제시되고 있음(서울시, 2017)

○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미래에 대한 저축 기반 마련, 자산의 축적 기반 취약으로 빈곤층 전락의 가능성이 증가되면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

- 현행 장애인 관련 소득 정책 등은 미래에 대한 저축 기반, 자산의 축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사전적으로 예방가능

○ 자산은 단순히 경제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 등 다양한 영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도록 지원

- 개인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안정감은 미래를 계획하고 나아가 이를 위한 투자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어,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침(김승아, 2008)
- Sherraden(1991)의 자산형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 심리·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①가족 간의 안정성 개선, ②장래 계획 수립 및 실행,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지지력이 증대, ③인적 자본을 포함한 다양한 여러 유형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확대, ④자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사업 추진 기반 마련 가능, ⑤갑작스런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 ⑥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사회활동을 촉진

2. 장애인 근로 및 생활 실태

1)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 현황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고용률 대비 74.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5월 기준 만 15세 ~ 64세의 등록장애인의 규모는 1,291,818명으로 이중 취업과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규모는 692,653명으로 집계(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이 중 취업자는 645,639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53.6%, 50.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대비 각각 1.1%p, 1.0%p 상승

〈표 Ⅱ-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추정)

구분		15세~64세 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장애 인구	2016	1,355,493	728,764	680,163	48,601	626,729	53.8%	6.7%	50.2%
	2017	1,382,558	721,961	680,170	41,791	660,597	52.2%	5.8%	49.2%
	2018	1,312,159	689,308	642,738	46,570	622,851	52.5%	6.8%	49.0%
	2019	1,291,818	692,653	645,639	47,014	599,165	53.6%	6.8%	50.0%
	증감	-20,341	3,345	2,901	444	-23,686	1.1%	0.0%	1.0%
전체 인구	2016	36,843,000	25,398,000	24,431,000	967,000	11,445,000	68.9%	3.8%	66.3%
	2017	36,871,000	25,663,000	24,713,000	950,000	11,208,000	69.6%	3.7%	67.0%
	2018	36,793,000	25,711,000	24,633,000	1,078,000	11,082,000	69.9%	4.2%	67.0%
	2019	36,807,000	25,774,000	24,692,000	1,082,000	11,033,000	70.0%	4.2%	67.1%
	증감	14,000	63,000	59,000	4,000	-49,000	0.1%	0.0%	0.1%

주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4) 증감은 18년 대비 증감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5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현황

○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5%, 고용률은 45.6%인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9%, 고용률은 20.3% 수준으로 고용안정성과 탈 고용 시 안전성이 미흡

-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74.2%, 여성은 54.2%로 남성이 20.0%p 더 높은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에 따른 격차는 26.6%p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Ⅱ-3〉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비교(추정)

구분		인구 수	비중	소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	남성	1,457,582	57.7%	707,053	664,770	42,283	750,529	48.5%	6.0%	45.6%
	여성	1,068,618	42.3%	234,083	217,120	16,963	834,535	21.9%	7.2%	20.3%
	전체	2,526,200	100%	941,136	881,890	59,246	1585064	37.3%	6.3%	34.9%
전체	남성	21,859,000	49.2%	16,225,000	15,535,000	690,000	5,634,000	74.2%	4.3%	71.1%
	여성	22,601,000	50.8%	12,243,000	11,788,000	455,000	10,358,000	54.2%	3.7%	52.2%
	전체	44,460,000	100%	28,467,000	27,322,000	1,145,000	15,992,000	64.0%	4.0%	61.5%

주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4) 증감은 18년 대비 증감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5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청년층과 고령층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중장년층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고용 여건이 취약함

- 장애인의 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15.1%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표 Ⅱ-4〉 연령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비교(추정)

구분		인구 수	비중	소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장애 인구	15세~29세	129,699	5.1%	46,702	39,638	7,064	82,997	36.0	15.1	31
	30세~39세	131,941	5.2%	77,366	70,467	6,899	54,575	58.6	8.9	53.4
	40세~49세	257,988	10.2%	158,272	150,695	7,577	99,716	61.3	4.8	58.4
	50세~59세	483,745	19.1%	275,517	257,570	17,947	208,228	57.0	6.5	53.2
	60세 이상	1,522,827	60.3%	383,278	363,519	19,759	1,139,549	25.2	5.2	23.9
	15세~64세	1,291,818	51.1%	692,653	645,639	47,014	599,165	53.6	6.8	50.0
	20세~64세	1,256,664	49.7%	689,220	642,831	46,389	567,444	54.8	6.7	51.2
	전체	2,526,202	100%	941,137	881,890	59,247	1,585,065	37.3	6.3	34.9
전체 인구	15세~29세	9,073,000	20.4%	4,390,000	3,953,000	437,000	4,683,000	48.4	9.9	43.6
	30세~39세	7,292,000	16.4%	5,757,000	5,543,000	214,000	1,534,000	79.0	3.7	76.0
	40세~49세	8,304,000	18.7%	6,682,000	6,519,000	163,000	1,623,000	80.5	2.4	78.5
	50세~59세	8,543,000	19.2%	6,659,000	6,488,000	171,000	1,884,000	77.9	2.6	75.9
	60세 이상	11,248,000	25.3%	4,979,000	4,819,000	160,000	6,269,000	44.3	3.2	42.8
	15세~64세	36,807,000	82.8%	25,774,000	24,692,000	1,082,000	11,034,000	70.0	4.2	67.1
	20세~64세	34,168,000	76.9%	25,540,000	24,475,000	1,065,000	8,626,000	74.7	4.2	71.6
	전체	44,460,000	100%	28,477,000	27,332,000	1,145,000	15,992,000	64.0	4.0	61.5

주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4) 증감은 18년 대비 증감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5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2) 경기도 장애인의 경제생활 실태 및 욕구

○ 경기도 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욕구 분석은 장애인 실태조사(2017)의 원시자료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분석

-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 경제활동 및 사회서비스 욕구, 생활 실태 등 장애인의 삶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집계조사이므로, 장애인의 삶과 욕구를 파악하는데 용이함

□ 경제활동 참여 수준

○ 경기도 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활동 이외에 진학을 위한 준비 21.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장애인도 약 2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5〉 경기도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 상태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일하였음	338	38.6	취업준비	4	0.5
일시휴직	4	0.5	진학준비	188	21.5
구직활동	3	0.3	심신장애	124	14.2
육아	2	0.2	쉬었음	135	15.4
가사	53	6.1	기타	2	0.2
정규교육기관 통학	17	1.9	총계	876	100.0
취업을 위한 기관 통학	6	0.7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7) 원시자료 분석

○ 경기도 장애인의 근로활동시간은 1주일 기준 주업 평균 15.9시간, 부업 0.2시간으로 총 16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 장애인 중 1주당 36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약 27.5% 수준으로 나타났고,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10.5%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Ⅱ-6〉 경기도 장애인의 평균 근로시간

구분	주업	부업	총 근로시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	15.9	0.2	16.1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7) 원시자료 분석

○ 경기도 내 근로 장애인의 근무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사업제 근무 비율이 57.4%, 자영업 28.4%의 비율로 나타남

-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근로기관 등의 근로 비율이 약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 장애인은 1주일에 평균 5일 정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약 8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7〉 경기도 장애인의 근무지 유형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영업	98	28.4	장애인근로사업장	6	1.7
일반사업체	198	57.4	장애인 관련기관	10	2.9
정부 및 정부 관련기관	20	5.8	기타	10	2.9
장애인 보호작업장	3	0.9	총계	345	100.0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7) 원시자료 분석

- 경기도 내 근로 장애인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196만원 수준으로, 2017년 4/4분기 기준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 236.7만원,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372.2만원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8〉 경기도 근로 장애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구분	경기도 내 장애인	전체가구 근로소득	근로자 가구 근로소득
월평균 근로소득	196	236.7	372.2

주1) 전체가구 및 근로자 가구 근로소득의 기준은 장애인 실태조사가 진행된 2017년 4/4분기를 적용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7) 원시자료 분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경기도 내 근로 장애인은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28.7%), 임시근로자(2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를 제외하면 근로 장애인의 근로안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 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지속적·안정적 고용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볼 수 있음

〈표 Ⅱ-9〉 경기도 근로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상용근로자	99	28.7	자영업자(노점 제외)	66	19.1
임시근로자	90	26.1	자영업자(노점)	3	0.9
일용직 근로자	52	15.1	무급가족종사자	8	2.3
고용주	27	7.8	총계	345	100.0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7) 원시자료 분석

□ 생활 실태

○ 경기도 내 장애인이 체감하는 경제 상태는 전체 가구의 57.2%가 하층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내 장애인의 57.2%는 하층, 41.9%는 중층, 0.9%는 상층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도내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며, 생계급여 11.6%, 의료급여 12.4%, 주거급여 12.4%, 교육급여 0.9%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0〉 경기도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104(11.6)	111(12.4)	105(11.7)	8(0.9)
비수급	793(88.4)	786(87.6)	792(88.3)	889(99.1)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7) 원시자료 분석

○ 도내 장애인의 수입원에 대해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289.1만원이고, 장애인 개인의 월평균 소득은 122.9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 42.6만원, 장애인 개인은 28.7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근로 활동을 통한 소득 확보 비율은 전체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근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높음

〈표 Ⅱ-11〉 경기도 장애인의 가구 및 개인 월 평균 수입 현황

(단위: 만원)

구분		가구 수입 (장애인 포함 전 가구원)	개인 수입 (장애인 개인)
근로소득		165.19	52.37
사업소득		56.00	25.00
재산·금융·개인연금 소득		12.81	8.78
공적 이전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5.73	4.06
	기초연금	9.01	5.39
	장애인연금/경증 장애 수당	2.88	2.26
	장애아동 수당	.14	.09
	장애연금(국민연금)	.90	.80
	기타 사회보험 급여 소득	22.08	14.93
	기타	1.89	1.15
사적 이전 소득		12.41	8.06
기타		.10	.01
월평균 소득 합계		289.13	122.91

자료: 장애인실태조사(2017) 원시자료 분석

- 장애인 가구가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월평균 지출금액은 209.1만원으로 월평균 수입 대비 72.3%수준으로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2017년 전체 저축률이 36.9% 수준임을 고려할 때(한국은행, 2017; Chosunbiz, 2017), 장애인 가구의 저축률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자금 준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Ⅲ 장애인 자산형성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1)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I, II 통장

□ **도입 배경**

○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통한 탈빈곤을 실현하고자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추진

- 2010년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추진(서울시, 2017)
- 2010년 1만 가구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이후 2013년에 2만 7천 가구로 확대되고, 최초 통장 가입자의 60% 가량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의 성과를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추진
  - 2015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Ⅱ로 사업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지원 목적

- 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탈빈곤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

○ 지원 가격

- 희망키움통장 Ⅰ의 지원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구
  - · 생계·의료수급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원 가운데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도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기준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희망키움통장 Ⅱ는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
  -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사업추진체계

-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고, 지자체는 대상자 관리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된 근로장려금의 적립과 관리를 담당

〈그림 Ⅲ-1〉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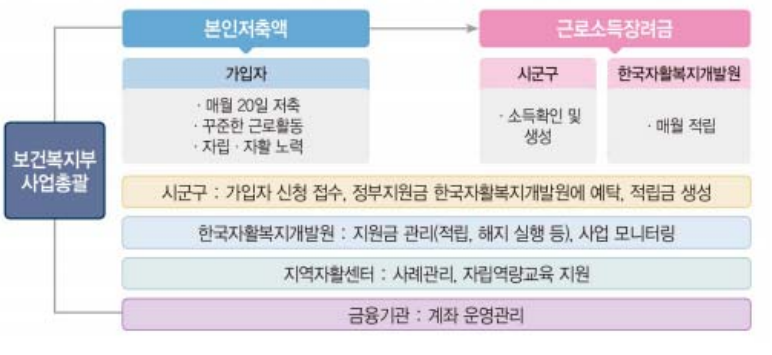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0)

- 희망키움통장 Ⅱ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금융기관이 전반적인 계좌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중앙자활센터가 사업의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

〈그림 Ⅲ-2〉 희망키움통장II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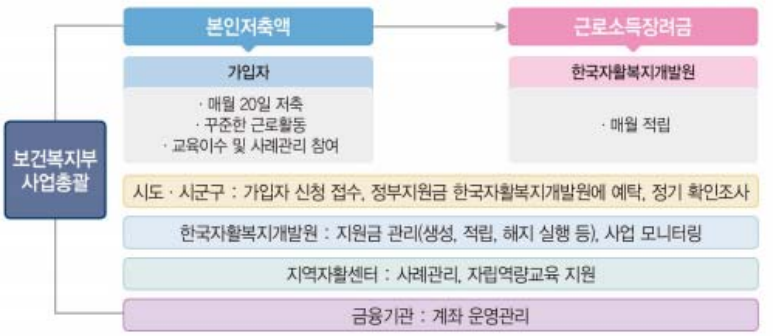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0)

○ 지원 내용

- 희망키움통장 Ⅰ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만기 후 3월 이내)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표 Ⅲ-1〉 희망키움통장I 지원 내용 예시

		주요 내용
지원액	3인 가구(월 소득 145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4 = 월 54만원⇒ 3년간 약 1,944만원
	4인 가구(월 소득 175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 = 월 62만원⇒ 3년간 약 2,232만원
최대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 = 월 62만원⇒ 3년간 약 2,232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64 = 월 74만원⇒ 3년간 약 2,664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

- 희망키움통장II 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1 매칭하여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
  -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 도입 배경

○ 2018년부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름통장 사업을 추진

- 이룸통장은 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대상 자산형성지원 사업임으로 장애유형(중증장애인)과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있어 포괄적이며, 거점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정혜은, 2019)

□ 주요 내용

○ 지원목적

-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서울시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이며,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지원 씨앗자금으로 활용하며, 자립준비 및 미래자산 용도가 저축의 목적임

○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가구당 중복가입 및 다른 유사통장 수혜자 중복 가입은 제외임

• 적용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표 Ⅲ-2〉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	2,907	3,760	4,614	5,467	6,321	7,174

자료: 보건복지부, 2019

○ 지원내역 및 혜택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이면 시비 15만원을 지원하며, 중도해지자는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회 이하 적립하고 타시도 전출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하며, 13회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그간 적립금(본인기여금+매칭지원금)과 이자 지급
  -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거주지를 이전 하거나, 경제적 여건 또는 기타 개인 사정으로 본인 저축 및 금융 교육 이수 등의 참가자 의무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매칭 지원은 어렵게 됨

〈표 Ⅲ-3〉 서울시 이룸통장 지원 내역(2019년 기준)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	1,080만원	1,260만원

- 또한 이룸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상담 및 저축관리를 받을 수 있음
  - 자조모임 : 참가자의 관계형성, 체험학습을 통한 사업 참여
  - 장애인 직업·직무 이해교육 : 발달장애인 직업 이해 교육
  - 신탁·성년후견교육 : 신탁·성년후견제도 활용 방안 등 관련 정보 제공
  - 상담프로그램 : 가족심리상담서비스, 맞춤형 전문 금융상담서비스 제공

○ 운영절차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 및 별도의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운영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정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개인별자산계획을 수립 및 자산관리 또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사례관리기관에서는 개인별자산관리계획에 따라 본인 통장에 저축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 또한 3년 만기가 되기 3개월 전, 만기 전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은 다음

사용 계획이 적합하면 만기 금액을 수령하거나 만기 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고, 적립금이 지급되면 사업은 종료됨

〈그림 Ⅲ-3〉 서울시 '이룸통장' 가입자 선발 및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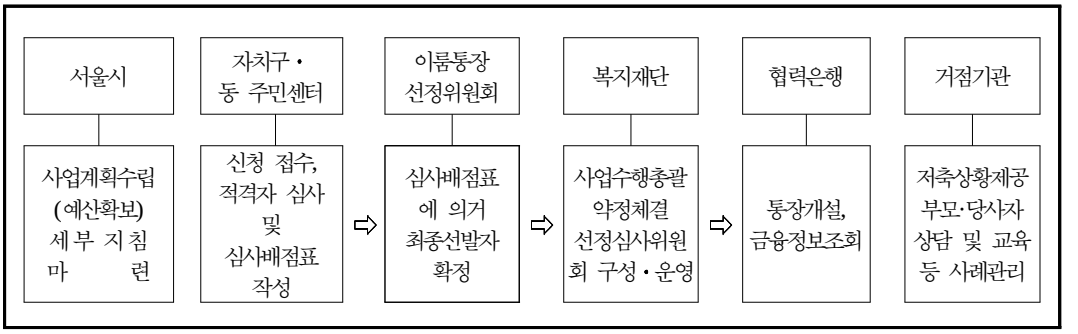

- 이룸통장 사업의 본인저축액 이체와 시비지원액 입금 절차는 총 적립액 중 본인저축액은 저축액적립통장에, 시비지원액은 시비지원통장에 각각 분리 입금되어 관리되며, 저축 만기 후 지급조건 충 족 시 일괄 지급됨
- 총 적립액(참가자 본인저축액+시비지원액+이자)은 3년 만기 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창업·직업훈련비, 자동차 구입비, 결혼자금,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마련(신탁, 장기 저축)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

○ 정책효과

- 2018년 한 해 동안 펼친 정책들을 시민투표로 통해 '서울시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는데, '이룸통장'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이 3위를 차지했음
  - 저축이라는 자산형성을 통해 참여자의 미래에 대한 경제적 위험 대응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대상자 스스로 구축하고 있다는 주관적 성과도 발생

2. 해외 사례

1) 캐나다

□ 도입 배경

○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

- RDSP는 캐나다 장애인 저축법(Canada Disability Saving Act, 2008)에 근거하여 캐나다 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
  - · Canada Disability Savings Act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있어 심각하고 장기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됨
  -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 발생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움
- RDSP는 Canada Disability Savings Act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
  - · Canada Disability Savings Act는 용어의 정리, 주요 목적, 지급방법, 주무부서, 일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Canada Disability Saving Plan의 주요 내용

○ Canada Disability Saving Grant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적립금의 기여분에 따라 100% ~ 300%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Canada Disability Saving grant는 1년에 $3,500 ~ 최대 $70,000까지 수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49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표 Ⅲ-4〉 가구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구분		기여금액	최대 지원 금액
$95,259 미만			
	$500	1:3($1:$3)	$1,500
	$1,000	1:2($1:$2)	$2,000
$95,259 초과			
	$1,000	1:1($1:$1)	$1,000

주) 기준금액은 매년 산출되는 물가상승률 및 가구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Canada Revenue Agency(2019)

○ Canada Disability Saving Bond 저소득층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000를 매칭 지원하여 경제적 기반 조성을 촉진

- Canada Disability Saving Bond는 일생에 최대 $20,000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49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표 Ⅲ-5〉 가구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구분	최대 지원 금액
$31,120 미만	$1,000
$31,120 ~ $47,630	$1,000를 기준으로 Canada Disability Saving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원
$47,630 이상	지원 없음

주) 기준금액은 매년 산출되는 물가상승률 및 가구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Canada Revenue Agency(2019)

○ Canada Disability Saving Act에 기반 한 Grant와 Bond 방식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지원방식은 경제적 기반을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큼

- 49세를 전후로 Canada Disability Saving Grant와 Bond 방식에 의해 가구소득 및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지원이 이루어지고, 해당 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60세를 전후로 연금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Canada Disability Saving Act 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의 최대 지원금액은 고정되어 있으나, 선정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개인 및 가구소득을 적용하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소득 기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Canada Disability Saving Act에 의한 RDSP 계좌는 2017년 12월 기준 약 $41억이 적립되어 있으며, 적립금액은 2016년 $33억 대비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RDSP의 적립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혜택이 크다는 것을 그 동안의 정책집행과정에서 검증이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대상자들의 RDSP 가입이 증가함 (Government of Canada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

〈표 Ⅲ-6〉 RDSP 계좌 요약

	2016년	2017년	변화 정도	
			차이	성장비율(%)
RDSP 계좌 등록 장애인 수	150,726	168,567	17,841	11.8
총 RDSP 자산 규모(백만 달러)	3,329	4,161	832	25.0
1인당 RDSP 계좌 규모	22,250	25,323	3,074	13.8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18), https://www.canada.ca

2) 영국

□ 도입 배경

○ 영국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Saving Gateway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자산형성 지원을 추진

- Saving Gateway 프로그램은 2001년 도입 이후 2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시행이 유보
  - · Saving Gateway는 2002년 1차 시범사업 추진 이후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관련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었으나, 2010년 이후 전국적 확대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 1차 시범사업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2차 시범사업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6개 지역에서 실시됨

□ 주요 내용

○ 지원목적

- Saving Gateway는 저축액 지원과 금융 교육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서 정부의 각종 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계좌에 정부가 일정액을 매칭하는 제도임
  - · Saving Gateway가 복지급여와 세액 공제 등을 수급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정책 집단으로 함에 따라 장애연금(Incapacity Benefit)과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등을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지원자격

- 근로연령의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근로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있거나, 생계비지원, 질병수당, 고용지원수당, 실업수당 중 1개 이상의 수당 및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있어야 함
  -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Saving Gateway를 받다가 대상자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개설된 Saving Gateway는 유지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Saving Gateway의 계좌 유지기간은 2년이며, 정부는 동 계좌에 대해 만기 전까지 매월 25파운드를 한도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고 참가자는 25파운드 이상 저축하는 형태로 운영

○ 지원내용 및 혜택

- 월 최대 25파운드 한도 내에서 가입자 기여금의 20%, 50%, 100%로 매칭비율이 설정되어 있음
- 가입자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때든 인출할 수 있으나, 정부가 매칭한 금액의 인출은 2년 이후에 가능하며 만기 이후 적립금액에 대한 사용 용도 제한은 없음
  - 시범사업에서 1:0.5와 1:0등 다양하게 적용해본 결과, 1:1수준까지 지원하지 않아도 저소득층의 저축 장려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어, 1:0.2와 1:0.5의 지급률 중 세부적인 비율을 설정하여 추진
  - Saving Gateway 만기 후에도 개인이 계속 저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Saving Gateway계좌를 ISA(Individual Saving Account)계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개인의 자산형성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HM Treasury 홈페이지,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 정책효과

- Saving Gateway는 2차례의 시범사업 추진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계좌사업들이 발생·등장을 촉진
  - Saving Gateway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해당 시범사업 종료 후 3~4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축활동을 유지해왔고, 참여자의 약 32%는 퇴직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미래 계획 수립에 관심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Paxton & White, 2006; 서울시복지재단, 2009)

3) 대만

□ 도입 배경

○ 2003년 이후 대만이 경기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저소득 가구의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도입 검토가 추진됨

- 대만 경제 상황에 좋았던 1991년~1999년 기간 동안 아동빈곤률은 8.1%에서 5.3%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6.7%, 2003년 7.6%로 증가하는 등 저소득 가구의 아동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서울시복지재단, 2007)
- 2000년 새로 선출된 타이페이 시장은 빈곤퇴치 3개년 사업의 정책수단으로 자산형성 지원 방식의 선택하였고, 가족발달계좌사업(TFDA, Taipei Family Development Accounts)을 시작하여 타이페이 내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매칭 저축계좌(matched saving accounts)를 제공함(Cheng, 2007)

□ 주요 내용

○ 지원목적

- TFDA는 3개년의 실험적 사업으로 제도적인 저축 유인책이 어떤 방식으로 빈곤층이 매칭저축액 및 사업을 통해 얻게 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자 의도된 프로그램임(서울시복지재단, 2007; Cheng, 2007)
  - 가족발달계좌사업(TFDA)은 저소득층이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금융정보를 얻으며,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산기반의 공적 부조 사업임

○ 지원 자격 및 내용

- TFDA를 신청하기 위한 대상자의 자격 기준은 ①저소득 가구이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②자발적인 저축 참여를 이행하여야 하며, ③저축금액은 2,000 대만달러에서 4,000 대만달러까지 대상자가 선택한 금액을 36개월 간 유지해야 함
  - 대상자가 선택한 수준의 최초 금액을 예치하면 TFDA 매칭계좌가 개설되고, 36개월 간 지속적으로 매칭금을 적립한 경우 동일한 예치금액과 동일한 비율의 지원금이 적립됨
  - 다만, TFDA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3개월 간 실직상태가 되면, 공공지원 사회노동자(Social Workers for occupational assistance)로 분류되고, 이 시점부터는 TFDA 대상자에서 제외됨

- TFDA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저축 및 재무 강의, 교육 과정에 참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후 TFDA 적립금 활용 가능
- TFDA 계좌는 3년간의 저축 및 교육 과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접근할 수 없고, 완료 후 해당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고등교육, 창업 및 주택마련 등 제한된 용도로만 활용 가능

〈표 Ⅲ-7〉 TFDA의 지원내용

구분	내용
시기	2000년 7월 ~ 2003년 7월(3년)
대상자	저소득가구(100가구)
참여자	자발적 참여 원칙
담당기관	사회봉사국(The Bureau of Social Service)
지원 금융기관	폴라리스 증권 재단(Polaris Securities Group Foundation)
연계은행	타이페이 은행
매칭 비율	적립금 : 지원금 = 1:1
예금 금액	NT$ 2,000; NT$ 3,000; NT$ 4,000 개인의 자율 선택
의무사항	참가자는 135시간의 교육 참여 및 이수 완료
적립금 사용용도	주택마련, 소규모 창업, 고등교육 재원

자료: Cheng, 2007; 서울시복지재단, 2007

○ 정책효과

- TFDA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유지한 69가구가 적립한 금액은 약 19,735,311 대만달러로 계좌당 평균 286,019 대만달러(1년 95,339 대만달러)를 저축한 것으로 나타남
  - 대만의 TFDA 사업은 가구의 자산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직접적 혜택 외에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저축 패턴 등의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TFDA에 참여한 가구 중 NT$ 2,000 21가구, NT$ 3,000 7가구, NT$ 4,000 47가구가 선택하였으나, 2000년 12월 매칭금액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된 이후 더 많은 매칭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8〉 TFDA 적립금액 가구 비중 변화

적립 금액	사업개시 시점	사업 완료 시점	비고
NT$ 2,000	28.0%	5.8%	△22.2%
NT$ 3,000	9.3%	4.3%	△5.0%
NT$ 4,000	62.7%	89.9%	27.2%

자료: Cheng, 2007; 서울시복지재단, 2007

3. 시사점

○ 국내·외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적립형 지원 방식으로 운영

- 미국의 IDA, 캐나다의 RDSP, 대만의 아동발달계좌,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지원 정책은 적립금액의 매칭비율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매칭형 자산형성 방식은 개인이 적립하는 금액 이외에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서 매칭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책임성의 요구가 용이함
- 또한, 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정할 수 있고, 금융 교육 프로그램 등 이수해야 할 요건을 대상자에게 부과하기 용이함

〈표 Ⅲ-9〉 국내·외 자산형성사업의 운영 내용 비교

구분	지원대상	기여방식	기여액	지원액	가입기간	수령방식	의무부과
미국 IDA	저소득층	매칭 방식	연간 $750	1:1 ~ 1:3	1년 ~ 4년	만기 일시 지급	근로활동 재정교육 의무 이수
캐나다 RDSP	장애인	매칭 방식	생애 총 $20만	1:2 ~ 1:3	59세까지	일시 지급	근로활동 재정교육 의무 이수
영국 GateWay	저소득층	매칭 방식	매월 25파운드	1:0.2 ~ 1:1	2년	만기 일시 지급	근로활동 재정 금융 의무 이수
대만 TFDA	저소득층	매칭 방식	매월 최대 $4,000NT	1:1	3년	만기 일시 지급	근로활동 135시간 관련 교육 의무 이수
희망키움I	저소득층	매칭 방식	월 10만원	1:1	3년	만기 일시 지급	근로활동
희망키움II	저소득층	매칭 방식	매월 10만원	1:1	3년	만기 일시 지급	근로활동
서울시 중증 장애인 통장	장애인	매칭방식	매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선택	15만원 고정 지원	3년	만기 일시 지급	근로활동

○ 만기 적립 후의 사용 용도에 대한 다양화 확보 필요

- 희망키움,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등의 사업은 주택마련, 창업자금, 학자금 마련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노동자 통장 역시 특정 사용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치료비, 보장구(보조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등 장애로 인해 추가로 매월 30만원 ~ 50만원이 소요되고, 때에 따라서는 휠체어, 보조기기 구입 등으로 목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

○ 장애인 자산형성의 개인부담금의 선택을 폭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의 경우 가입금액을 5만원, 10만원, 1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보면 가입금액의 제한은 두지 않고 월별 또는 연간 한도만 설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경우 매월 일정한 여윳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일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 매월 불입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필요
  - · 장애인의 경우 매월 일정한 여윳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고정하기보다는 매월 불입액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저축 유지에 더 유리할 수 있음

○ 자산형성 외 경제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참여, 재무 컨설팅 등 비경제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역량과 안정적인 가구 재정 운영을 위한 재무 컨설팅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및 유지 기반 강화
  - ·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 및 교재 등을 통해 교육 효과 촉진
-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 가구원들에 대한 교육 및 재무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가구 내부적인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강화

○ 장애인의 생활 및 소득에 대한 관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기반 강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가구의 구성원 누구나 불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

-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대상자 본인을 저축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데, 저축의 지속성·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저축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즉, 장애인 자산형성지원금의 수령자(수혜자)는 장애인으로 한정하되, 저축자는 장애인 가구 내 배우자, 가족 등으로 확대하여 저축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안정적·지속적 유지에 기여

Ⅳ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방안

1.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기본 방향

1) 기본방향

□ **전체 개요**

○ 자산형성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권 관점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

- 장애인의 기본 특성인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 소득 역진적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형성 방식으로 설계

○ 장애인 가구의 탈빈곤 및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보편적 공공부조 등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지속적 확대 기조 하에서 장애인 가구의 자산형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 장애인의 지속적 근로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과 경기도의 역할, 유관 기관의 지원 등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
-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시민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 내에서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추진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우선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 등을 고려하여 임시·일시 근로 장애인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점증적으로 정책의 혜택 범위를 확대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경제적 지원 외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및 교육, 역량강화 등 유관 서비스 제공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자립 기반 강화

- 장애인의 빈곤예방 및 경제적 기반 강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빈곤계층으로의 전락 가능성 완화에 초점을 둔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적립금 매칭 외 경제 교육 및 역량강화, 대상자 사회서비스 연계 등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

2) 운영 방안

□ 개요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사업과 청년통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점증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

-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운영 모형을 제안하지 않고, 다양한 조건과 요구를 반영하고, 이 사업이 국가 시책으로 제도화되는 단계까지 함께 고려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 형태로 각각 사업 운영 모형을 제안
- 장애인 자산형성사업과 기존 제도와의 연계·활용은 사업의 안정적 시행이 용이하고, 제도적·정책적 연계성을 높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가능

○ 또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금 보험, 세제 혜택 등과 연계함으로써 제도 혜택의 연속성을 확보 가능

○ (1단계) 장애인 자산형성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청년통장 등 기존 사업의 운영 체계와 연계하여 추진

- 다년간 운영한 청년통장 사업 운영체계를 활용하되, 근로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 적 수요에 맞게 일부 사업의 운영 방식과 내용을 수정·보완
- 또한, 장애인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반면,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

○ (2단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대상자의 점증적 확대를 통해 보다 두터운 지원 체계 정립

-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자산형성사업의 개편·확대
- 또한, 향후 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를 사전적으로 대비하여 경기도차원의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

○ (3단계) 장애인 자산형성의 경제적 지원 외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사회서비스의 연계 기능 강화

- 대상자의 경제적 자산형성 외 경제적 자립 역량, 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자산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장애인 복지 모델을 지향

〈그림 Ⅳ-1〉 경기도형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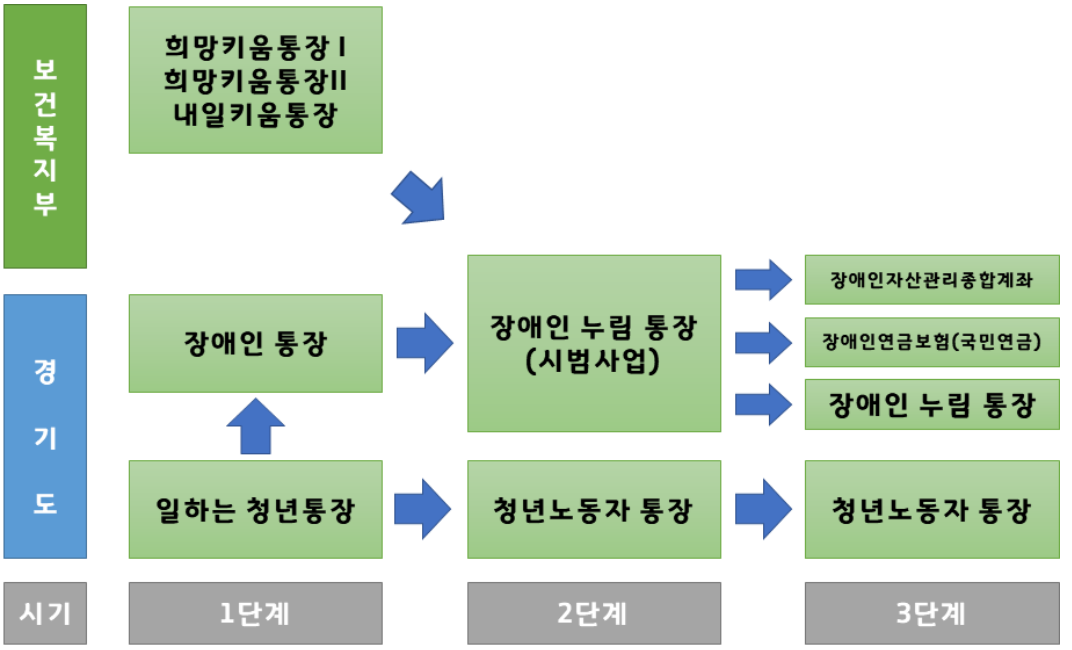

2.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사업설계(안)

□ 사업목적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가칭)의 사업목적은 장애로 인한 미래 비용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빈곤층의 전락을 예방하는데 있음

- 저소득층 근로 장애인에게 적금형 저축방식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취업,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
-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대상

○ 경기도 장애인자산형성사업의 대상은 경기도 거주 근로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대상을 점증적으로 확대

- 경기도 내 근로 장애인 가구는 211,291 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약 16.6만 가구로 추정
  - 2019년 기준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는 약 547,386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장애인이 있는 가구 수는 등록장애인 수와 동일하게 적용
  -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근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약 38.6%로 도출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는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태조사 결과 가처분 소득 기준 78.7%로 도출
-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가구 중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점증적으로 소득기준 완화 및 대상 규모 확대 등의 방식으로 추진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 초기 당시 대상자는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 경기도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범주를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장애인의 소득보장 체계와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존재한 대상자를 포괄하는 등 기존 정책의 보완적 제도로 추진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근로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을 개인의 부담금을 고려하여 매칭

- 개인 기여(저축)분에 따라 경기도가 일정 비율에 따라 매칭하여 저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최대 매칭비율은 1:3을 넘지 않는 구조로 설계
- 개인 기여(저축)분은 5만원 ~ 15만원 범위로 설정하고,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최초 저축금액을 설정한 후 가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개인 기여(저축) 금액에 대한 변경이 가능
  - · 캐나다의 RDSP 등과 같이 장애인 개인의 부담금에 따라 경기도는 1:1의 매칭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
  - · 근로 장애인과 경기도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자산형성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추진
-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은 대상자가 부담하는 지원금에 비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금을 분담하고, 자산형성의 일정 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36개월을 기준으로 설정함

〈표 Ⅳ-1〉 적립금 수준별 경기도 지원금 및 만기적립금 예상액

구분	사업 참여자(명)	경기도 지원금(원)	만기 적립금(원)
5만원	50,000	50,000	3,600,000 + @
10만원	100,000	100,000	7,200,000 + @
15만원	150,000	150,000	10,800,000 + @

주) @는 사업 추진 당시의 관리 은행과 약정 체결 이자에 따라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최종 만기적립금액은 지급 이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예: 적금이자 1%인 경우, 만기적립금은 약 729만원 수준)

○ 자산형성지원 외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병행

- 자산형성을 통해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장애인이 경제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애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시켜 재무 컨설팅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 실제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관리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적립 주체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주체는 사업 참여 당사자이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까지 인정

- 장애인의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직계 존비속의 범위에 한정하며, 등본 상 동거인의 경우에는 제외함

□ 적립기간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적립기간은 최소 3년으로 설정하여 운영

- 자산형성 사업은 자산축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최소 기간이 필요하며,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최소 3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사업의 성과 평가 이후 적립기간에 대해서도 3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립기간의 형태로 운영 가능

□ 사업운영 체계

○ 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의 운영은 기존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금융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

-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 초기부터 장애인 대상 자산형성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인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참여자 선정, 대상자 사례관리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 또한, 청년노동자 통장과 달리 저축액과 매칭지원금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관리체계와 차이가 있고, 만기 적립금 지급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
  - ·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운영 기관으로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이미 축적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용이함

- 다만, 장애인의 자산형성이라는 특수성과 금융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 등 역량강화 준비가 필요
  · 현재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관리 인력이 8명이고 사업 대상자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장애인 자산형성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인력 증원 필요

○ 장애인 자산형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립, 집행, 관리, 구체적인 운영 대상자 관리 등 사업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 : 사업총괄, 사업기획 수립·추진·관리 및 예산 지원, 기본 제도 정립
- 시·군 : 시·군별 모집된 대상자에 대한 1차 심사 등
- 경기복지재단 : 참가자 최종 선정 및 통지, 참가자 매칭적립 지원, 참가자 저축관리, 참가자 금융 등 서비스 지원
- 협력기관 :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무컨설팅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접수 및 서류 심사, 사업 홍보 등
- 협력 은행 : 매월 저축액 확인 및 통보, 계좌별 매칭 지원금 입금 등

〈표 Ⅳ-2〉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 체계

구분	주요 역할
경기도	• 사업총괄, 사업기획 수립·추진·관리, 예산 지원
시·군	• 시군별도 모집된 대상자의 심사, 최종 선정 대상자의 120%에 대한 명단 및 서류 제출
경기복지재단	• 참가자 최종 선정 및 통지, 참가자 매칭적립 지원, 참가자 저축관리 참가자 금융 등 서비스 지원
협력기관	•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무컨설팅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접수 및 서류 심사, 사업홍보 등
협력 은행	• 매월 저출액 확인 및 통보, 계좌별 매칭 지원금 입금 등

□ 사업운영 절차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신청, 지원, 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Ⅳ-2〉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운영 절차(안)

추진 단계	담당 기관	주요 내용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 + 온라인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청서 접수 등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원 요청 가능
서류심사	시·군	•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 진행 • 시·군별 선정 대상자의 120%에 대한 예비 선정자 제출
최종 심사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 최종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약정 체결	경기복지재단	• 선정된 참가자와 경기복지재단 간 사업 참가에 대한 약정 체결
통장 개설	경기복지재단 협력은행	•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참가자에 대한 통장 일괄 개설
개인별 자산관리계획 수립	경기복지재단 협력기관	•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몇 자산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재무컨설팅, 교육, 자조모임 등 지원
만기 적립금 지급	경기복지재단	• 만기적립금 지급에 대한 계획 수립 • 대상자별 만기적립금 지급 기준 충족 여부 판정
대상자 사후 관리	경기복지재단 협력기관	• 만기적립금 지급 후 대상자별 사례 관리

○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사업의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방법으로 동 주민센터별 홍보 포스터 부착, 신청서식 비치, 접수 창구 표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 포스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부 내용 및 모집시기의 비정기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예측의 한계가 존재
- 특히,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정보 획득 주요 경로, 선호 정보 획득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을 진행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Ⅳ-3〉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홍보 방안

홍보 방안	주요 내용
정보 제공 및 경로 다양화	• 기존 동 주민센터 외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활용 • 기존 언론사 이회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언론사 활용
정보 제공 방법 다양화	• 기관/시설/ 단체별 포스터 부착 • 사업내용이 상세하게 기재 된 리플렛 배포 • 장애인 언론사를 활용한 광고 게시 • 자치구별 사업 설명회 개최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정보 제종	• 홍보 자료 및 신청 절차 등을 easy read 버전으로 제작, 배포 ※ 포스터 또는 리플렛 최초 제작시 easy read 버전으로 제작하여 추가 자료 제작으로 인한 비용 부담 해소 • 해당 정보에 대한 수화 통역, 점역 또는 의사소통 조력이 필요한 경우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지원

자료: 서울시(2017)

○ 참가신청서 접수

- 참가신청서 접수를 단계별로 제시해 보면, 참가신청서 교부, 참가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구비, 참가신청서 제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접수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Ⅳ-4〉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운영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신청서 작성	• 본인 또는 가족 중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또는 거점기관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조력 가능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가입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과정에서 조력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관할 거점기관 담당자에게 조력인 지원 요청
증빙서류 준비	• 가입신청서(또는 읽기 쉬운 버전 가입신청서) • 가구원소득신고서(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한 원초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18세 이상 동일 가구원 전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동일가구원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 본인이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동 주민센터와 상의하여 우편 접수할 수 있음

주1)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 접수
자료: 서울시(2017)

○ 개인별자산관리계획 수립

- 대상자의 사례관리 담당 기관에서는 개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및 가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적립하게 되는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자산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개인별 자산관리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①현재 자산 보유 수준, ②미래의 자산형성 목표 및 계획, ③경기도 지원 사업 내용, ④대상자 특성 및 주요 점검 내용 등으로 구성

〈표 Ⅳ-5〉 개인별자산관리계획 수립 반영 주요 내용

단계	주요 내용
현재 자산 수준	• 현재의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보유 현황 제시
미래 자산 형성 계획	• 향후 5년 또는 10년 이내 대상자가 확보하고자 하는 자산계획 제시 • 목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 및 기관의 지원 내용
경기도 지원사업 운영 계획	• 경기도 장애인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정보 제시(적립기간, 적립금, 사례관리기관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또는 기타 서비스 참여 내용 등)
점검 계획	• 경기도시 지원 사업의 이행(집행) 유무 점검 •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기관의 지원 사항 이행 유무 점검 • 경제적 역량 증진을 위한 재무 및 금융 관련 교육 이수 점검

자료: 서울시(2017) 자료를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가구의 부채 또는 낮은 저축률 문제는, 이들이 재정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 금융·재무 관련 교육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원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
- 교육의 주요 내용
  - · 저축목표 설정과 가계 수지의 이해, 수입 늘리기와 합리적으로 지출하기, 저축과 은행 서비스 이해, 신용관리의 이해, 부채관리 노하우 등 가계경제를 향상시켜 유지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관리 교육
  - · 선택교육은 주거, 창업, 교육훈련, 임대주택정보, 창업업종 및 아이템 정보, 자격증 정보 등을 중심으로 교육
- 교육 기간
  - · 1년 2회 이상 총 6회의 의무교육 제공
  - ·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충교육을 통해 의무 교육을 이수
  - ·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관련교육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 설정

□ 적립금 지원 소요 재원 추정

○ 기본 가정

- 경기도 내 근로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 수는 약 16.6만가구로 추정
- 16.6만 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대상가구를 선발하여 3년 동안 총 3,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 · 정책대상자는 총 3,000명(누적 9,000명)이며, 2021년 신규로 1,000가구로 선발하여 2023년까지 유지, 2022년 신규로 1,000명을 선발하여 2024년까지 유지, 2023년 신규로 1,000명을 선발하여 2025년까지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 경기도는 가구당 매월 15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

○ 소요 재원 추정

- 대상자는 매년 1,000명씩 신규 선발 시 최대 3,000명(누적 9,000명)이 정책대상이며, 3년간 적립금 지원 소요 예산은 약 162억 원으로 추정
  - · 연차별 소요예산은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가 중첩되는 2023년에 약 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표 Ⅳ-6〉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지원 대상 및 소요 예산 추정

(단위: 명,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차 대상자	1,000	1,000	1,000	–	–	3,000
2차 대상자	–	1,000	1,000	1,000	–	3,000
3차 대상자	–	–	1,000	1,000	1,000	3,000
누적인원	1,000	2,000	3,000	2,000	1,000	9,000
소요 재원	1,800,000,000	3,600,000,000	5,400,000,000	3,600,000,000	1,800,000,000	16,200,000,000

주1)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계상하지 않음

3.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도 장애인의 자산형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조례 등)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나, 자산형성 등 지원 근거가 미흡

-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 이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 · 현행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형성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함

○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조례」 제3장에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

- "제24조(장애인 자산형성)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산형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의 신설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경기도 조례 6585호)	
제3장 장애인복지정책 기본 방향 제13조(장애인의 생활 안정) 도지사는 장애인의 보건, 결혼, 보육 및 그 밖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의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교육 자	**제3장 장애인복지정책 기본 방향** 제13조(장애인의 생활 안정) 도지사는 장애인의 보건, 결혼, 보육 및 그 밖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의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교육 자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경기도 조례 6585호)	
료 제작·배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의 주거안정 등) 도지사는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의 가족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적 인식개선) 도지사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장애인 지원)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교육, 출산, 직업, 폭력예방 등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고령장애인 지원)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건강 및 의료, 일상생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료 제작·배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의 주거안정 등) 도지사는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의 가족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적 인식개선) 도지사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장애인 지원)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교육, 출산, 직업, 폭력예방 등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고령장애인 지원)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건강 및 의료, 일상생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장애인 자산형성)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산형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 서울시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을 추진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 6889호)

제2장 자립생활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8. 7. 19.〉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u>
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경기도형 장애인 소득보장지원 모델 구축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 간의 연계·통합을 통해 경기도형 장애인 지원 모델 구축을 검토

- 기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참여 이전 단계에 범주형 기본소득의 방식을 혼용하여 '경기도형 소득보장지원' 모델을 구축
- 기존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서 근로활동 등 자산형성사업의 참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상자 선발 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
- 기존 소득보장체계에서 배제되었거나, 장애인 자산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도형 장애인 기본소득(가칭) 제도 신설·운영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제공 후 사업으로 편입하는 구조로 운영

〈그림 Ⅳ-3〉 경기도형 장애인 소득보장지원 모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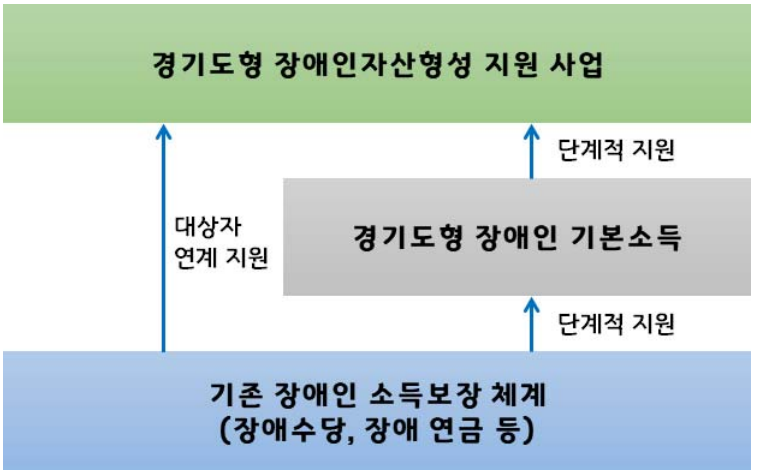

참고문헌

〈국내자료〉

권지성(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3):193-218.

김기륭(2019). 2018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 기초연구, 서울시복지재단.

김승아(2008). 「저소득층의 자산과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2011).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자활사업안내 II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서울시복지재단(2007).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투자모델과 발전방안」, 국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시복지재단(2009). 「탈빈곤의 희망-'서울형 복지' 모델과 자산형성 프로젝트」, 국제 학술포럼 자료집.

이경란(2016).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이 참여자의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혜은(2019).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연구, 인천연구원.

조규형(2019). 중장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최현수(2017).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은행(2017). 『국민계정으로 본 우리 경제』, 한국은행.

Cheng, L. C.,(2010). 사회통합전략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서울시복지재단 국제심포지엄 발표집.

〈국외자료〉

Government of Canada(2018), Canada Disability Savings Program – Annual Statistical Review 2017, Government of Canada.

Paxton. W & Whit. S(2006), 'Universal capital grants: the issue of responsible use' in Paxton.W and White.S with Maxwell. D(eds) Citizen's Stake: Exploring the Future of Universal Asset Policies Bristol: Policy Press.

Sherraden, M.(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Inc.

Sherraden, M.(2005). Inclusion in the American Dream: Assets, poverty,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Canada Revenue Agency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Canada Disability Saving Act Justice Laws https://laws-lois.justice.gc.ca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

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보도자료〉

"빈곤층 지원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2020년 2월 24일.

"저금리에도 저축률 '쑥'… 불황 부르는 저축의 역설", 「Chosunbiz」, 2017년 8월 17일.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20-09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연구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